

이 의 신 청 심 사 결 정 서

| | | | | |
|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|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|
| 이의신청 농업경영체 | 성 명 (법인명) | | 생년월일 (법인등록번호) | |
| | 이의신청 내용 | | 통지서 (공고문) 번호 | 통지(공고) 일자 |
| 처리내용 | | 처리결과 및 사유 | | |
| 이의신청 의견 | | | | |
| 심사결정 | 결 정 | (수용, 기각) | | |
| | 사 유 | | | |

「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6조의3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의4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결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.

※ 이 결정에 불복할 때에는 「행정심판법」 제27조 또는 「행정소송법」 제20조에 따라 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.

년 월 일

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
또는 산림청장

